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9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9. 9.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공공사업, 공익사업의 경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선납 원칙으로 변경하여 체납 발생을 줄이고, 복구비용 산출항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적용 요율을 변경하여 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공사는 후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산출방식 변경(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정옥)

- 본 건은 공공사업, 공익사업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하고 복구비용 산출항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적용 요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 외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을 선납으로 규정하였고
 - 안 별표 1에서는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산출방식을 변경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후납 부과 허용으로 인해 수시 체납이 발생됨에 따라 체납 발생 예방을 위하여 선납 부과 원칙으로 개정하고,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9 호
----------	---------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사업, 공익사업의 경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선납 원칙으로 변경하여 체납 발생을 줄이고, 복구비용 산출항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적용 요율을 변경하여 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는 후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나.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산출방식 변경(안 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 4)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9. 8.22. ~ 2019. 9.1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최적구배”를 “최적기울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율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기율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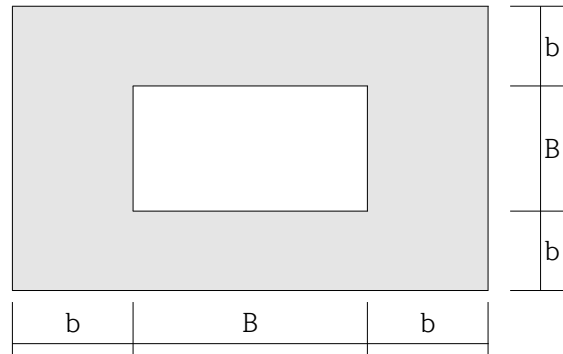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1.2m	1.2m×1.2m	1.2m×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손계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	직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4cm) 비용
	감독 업무비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굴착폭(B), 간접손계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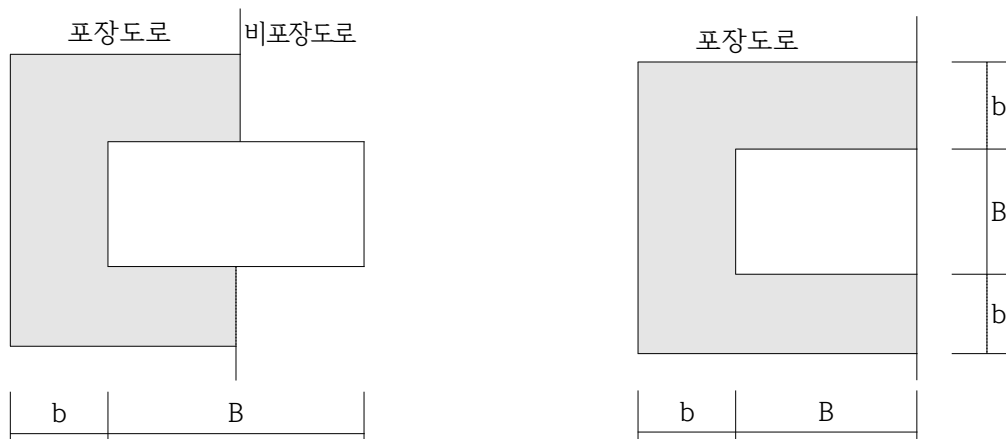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계영향(b)

1) 표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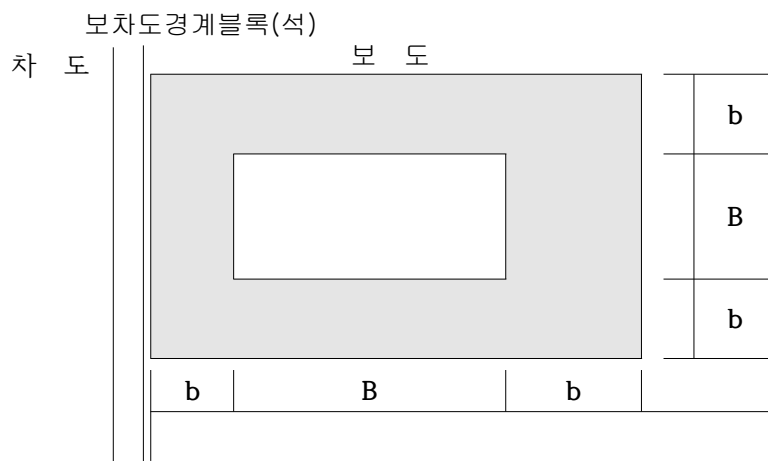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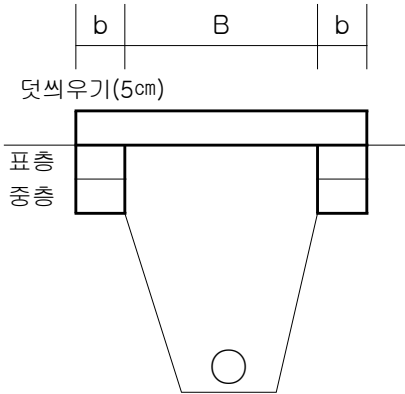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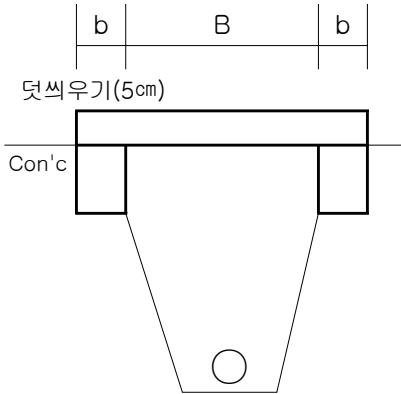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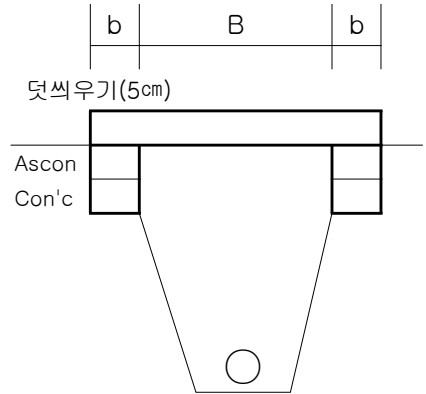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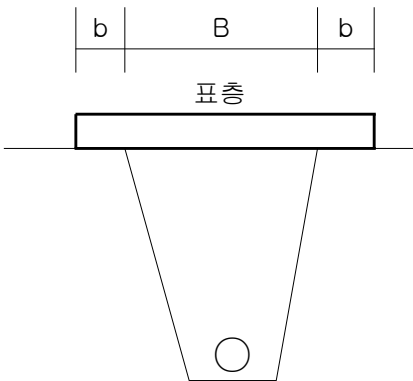


③ 아스팔트덜씩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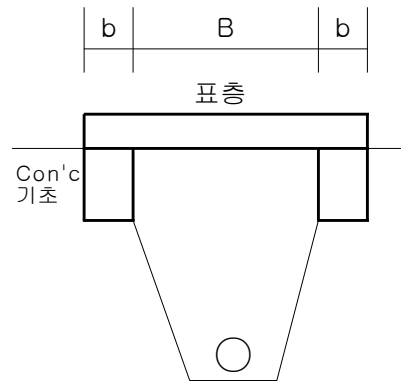


2)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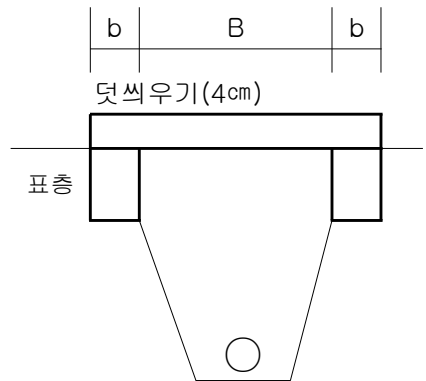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계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계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계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계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① ~ ②(생략)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u>최적구배</u>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 <u>최적기울기</u> ----- ----- ----- -----.
④ <u>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u>	④ <u>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u>
1. <u>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u>	<삭 제>
2. <u>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u>	<삭 제>
3. <u>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u>	<삭 제>
⑤(생략)	⑤(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1.2m	1.2m×1.2m	1.2m×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손계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감독업무비	직접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에너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분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간접		

개정안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 표준 최적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1.2m	1.2m×1.2m	1.2m×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손계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감독업무비	직접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	
	간접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